

대통령령

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가정보원 (수사국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이유

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직무변화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안보범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의체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관협력, 협의회 및 정보협력 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 ‘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’(案)을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규정의 목적·용어의 정의·임무범위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
- 1)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
- 2)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,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열거

나. 기관간 협력,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, 안보범죄정보협력 센터의 설치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4조 ~ 제8조)

다.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,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,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(안 제9조 ~ 제12조)

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다목·라목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4항, 제5조에 따라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보범죄정보”란 「형법」 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의 죄, 암호 부정사용의 죄,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및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2. “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”이란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국가정보원

나. 법무부

다. 경찰청

라. 해양경찰청

마. 군사안보지원사령부

바. 기타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범죄
정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

제3조(안보범죄정보업무의 수행) 이 영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
업무(이하 “안보범죄정보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한다.

1. 안보범죄정보 수집·작성 및 배포
2. 안보범죄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, 외국 및
외국인·외국단체·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
확인·견제·차단하고,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
3. 안보범죄정보 관련 업무수행방법 개발 및 제도 개선
4.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공유와 공조체제 구축
5. 그 밖에 안보범죄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

제4조(기관 간 협력 등)

- ①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은 안보범죄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에게 협력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협력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 또는 지원한다.

제5조(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)

- ①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
 1. 안보범죄정보의 공유절차·처리결과 통보 등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
 2. 안보범죄정보 업무수행방법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
 3. 제6조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 4. 제7조 안보범죄정보업무 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
 5.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간 직원의 파견,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 6. 그 밖에 안보범죄정보 공유 및 기관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

- ③ 협의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협의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른 각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.
- ⑤ 협의회는 年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 및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 요청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- ⑥ 협의회 논의사항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협의회 회의 상정예정 안건 중 사전 실무협의를 필요한 사안
 - 2. 협의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
 - 3. 기타 안보범죄정보 공유 관련 실무 현안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
-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)

- ①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(이하 “협력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협력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국내·외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·분석·공유
 2. 안보범죄정보 공유에 필요한 전산공유체계 구축·운영
 3. 그 밖에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 간 안보범죄정보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정보원장은 협력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- ④ 협력센터의 장은 제3항과 관련된 주요 성과 등을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협력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 1.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
 2.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공유

제7조(안보범죄정보업무 계획의 수립 등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범죄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
논의를 거쳐 안보범죄정보활동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
하여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안보범죄정보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
 2.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안보범죄정보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
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④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 결과를 협의회 회의를
통해 공유한다.

제8조(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광역시·특별자치시
·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안보범죄정보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안보
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9조(안보범죄정보의 보안대책)

- ①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은 공유된 안보범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은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에서 공유한 정보를 타 기관 또는 대외 제공시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보범죄정보교육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안보범죄정보업무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의 장이 소속 구성원에 대한 안보범죄정보업무 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 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)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정보처리 결과의 통보)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은 다른 안보범죄정보 협력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개시·종결 등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·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포함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안보범죄정보업무
2.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의 운영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영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영 시행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안보 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위한 위원 및 조직의 구성,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준비행위는 이 영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